의안번호	2203849
의 뢰 인	문대림 의원
회 답 일	2024. 9. 4.
추계번호	24B335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제1항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 ※ (현행) 광역시[1] → (개정안)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 비수도권 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제1항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도로법 시행령」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②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로 한다.
1.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법 제4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연결하는 도로
2.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3.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아니한 도로

2. 상세 사유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추가(안 제8조제1항)

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 5년 단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현재 4차, 2021~2025)”을 바탕으로 대도시권 간선도로의 혼잡 완화를 위한 개선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 사업대상: 대도시권(광역시의 洞지역)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도로
- 재원분담: 계획 확정 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와 매칭방식*으로 추진

  * 국가가 설계비 50%, 공사비 50% 지원

  (계획은 국가가 수립, 계획 이후 토지보상·설계·공사·유지관리는 지자체가 수행)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에서 발굴한 교통혼잡도로 중 비용편익(B/C) 점수 등 타당성이 높은 사업 순으로 5년 단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대상에 선정이 되고, 이후 각 사업별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진됨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선정되었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나 다른 국가계획과의 충돌 등으로 실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시작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총 55건의 개선사업이 결정되어 현재까지 21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7건, 아직 착수되지 않은 사업은 17건으로, 총 55건 사업의 건당 평균 사업비용은 1,928.6억원, 건당 평균 사업 규모는 3.8km임

[표 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추진 현황(2024.1월 기준)

구 분	연장(km)	총사업비(억원)	국비(억원)	비 고
총 55건	210.1	106,071	33,395	평균 1,928.6억원/건, 평균 3.8km/건, 평균 504.9억원/km,

구　　분	연장(km)	총사업비(억원)	국비(억원)	비　고
완료(21건)	84.0	34,499	9,707	
추진중(17건)	74.9	44,959	16,650	
미착수(17건)	51.2	26,613	7,038	

주: 총사업비와 '국비×2'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액은 대부분 지자체 부담 토지보상비임
자료: 국토교통부

나. 사업 대상에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추가

○ 2024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2]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곳은 창원, 청주, 천안, 전주, 포항, 김해 등 6개임

[표 2] 인구 50만 이상 도시 현황

연번	도시	비고
1	창원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2	청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3	천안	
4	전주	
5	포항	
6	김해	

자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2호)

○ 사업 대상에 위 6개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할 경우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이 되는 도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각 도시의 혼잡도로 중 비용편익(B/C) 점수 등 타당성이 높아 사업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① 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년도 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 이상인 시로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②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인구의 감소로 전년도 각 분기 말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시는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된다.
③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인구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구 50만"은 "인구 100만"으로 본다.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혼잡도로의 수량이나 규모를 알 수 없고, 도시마다 토지보상비의 수준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으로 결정된 55건 사업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현재로서는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최근 3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개요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지원	18,800	15,813	3,908	1,688	8,627	5,020	혼잡도로 사업 설계비 지원
광주북부순환도로	5,000	-	1,600	1,600	3,100	3,100	L=6.7km, B=20m(4차로)
옥동-농소1공구	5,122	5,122	3,132	3,571	-	-	L=8.0km, B=20m(4차로)
을숙도-장림고개	17,402	21,862	6,307	9,598	-	-	L=2.31km(지하차도 2.0km), B=22~35m(4~6차로)
상개-매암	1,115	1,115	-	-	-	-	L=3.46km, B=20m(4차로)
덕천동-아시아드	10,060	10,060	6,800	7,285	-	-	L=4.37km, B=20~45m(4차로)
용두-담양	-	-	423	701	66	66	L=1.6km, B=20~30m(2→4차로)
상무지구-첨단산단	4,529	6,027	4,000	7,500	3,156	3,156	L=4.98km, B=21~27.5m(4~6차로)
월전동-무진로	2,548	-	2,540	4,147	1,900	1,900	L=6.25km, B=21.5~31.0m(4차로)
달서구 상화로	4,224	-	15,000	15,000	24,136	24,136	L=4.1km(지하도로), B=20m(4차로)
정림동-버드내교	-	-	1,212	1,212	3,900	3,900	L=2.4km, B=18.0~19.8m(4차로)
엄궁대교	2,000	100	9,600	-	10,513	0	L=3.0km, B=25m(6차로)
대덕특구동측진입로	-	-	1,212	1,212	4,000	4,000	L=1.3km, B=25m(4차로)
농소-강동	-	-	8,500	8,500	15,000	15,000	L=10.8km, B=20m(4차로)
만덕-센텀	28,108	19,000	12,800	12,800	15,200	15,200	L=9.62km(지하도로), B=11~27.5m(4차로)
식만-사상	9,500	-	24,000	24,000	15,470	0	L=8.24km, B=20m(4차로)
금곡-대곡	-	-	-	-	5,921	2,921	L=3.2km, B=29m(4차로)
호남고속도로-북부순환로	-	-	-	-	1,000	1,000	L=1.2km(진입램프), B=8m(1차로)
각화동-제2순환로	-	-	-	-	500	500	L=0.4km(진입램프), B=8m(1차로)

자료: 국토교통부